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 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2 | 2025.02.10. (2025.02.03.~2025.02.0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03.~2025.02.0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410억)보다 3.2% 증가한 1조 1,780억원(계속 1조 890억, 신규 89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는 등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9인)**」,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패션산업 진흥법안(김재원의원 등 13인)」 ,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2.10(월) 및 2.11(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12(수)부터 2.14(금)까지 대정부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재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7
-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조성 위한 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3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국토교통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5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16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7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 18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9인) 23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25
- 패션산업 진흥법안(김재원의원 등 13인) 26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8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29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3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3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3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0인) 3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3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 [해외 규제]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4 (2025년 2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1 (2025년 2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

-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780억원 투자
- 92개 과제 공고, 첨단산업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 뒷받침

2025-02-05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410억)보다 3.2% 증가한 1조 1,780억원(계속 1조 890억, 신규 89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음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019억), 이차전지(1,009억), 바이오(1,0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함

또한, 기계금속(3,053억), 자동차(890억), 화학(1,113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 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함. 특히,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주요 신규과제]

구분	주요 신규과제
패키지형 (소재·부품 동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박막증착용 고순도 희속금속 전구체 생산 원료 제조 기술 개발 - 전계발광 양자점(EL-QD) 디스플레이 패널용 발광소재와 소자, 잉크젯 장비 개발 - 재자원화 시설내 생분해 처리가능 플라스틱 소재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 - 국제 환경 규제 대응 자원 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wt%H₂급 복합상 금속수소화물 기반 고효율 수소저장 부품화·모듈 개발 - 오가노이드 생착물 향상을 위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잉크소재 개발 - Micro LED Display를 위한 1억 UPH급 고생산성 전사 기술 개발 - 모바일 반도체 모듈 패키징을 위한 EMI 차폐 및 방열 소재/부품 기술 개발 -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위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제조 공정 및 실증 기술 개발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R&D를 지속 확대한다고 밝힘. `23년 176억원, `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71.3%)을 투자해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함.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先)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24년 1,698억원에 이어 `25년은 3,027억원(+78%)으로 대폭 확대 지원함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조성 위한 MOU 체결

-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1조원 이상 투자
- 신한은행 2,500억, 기업은행 1,800억, 우리은행 640억 등 4,940억 출자
-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조성 및 운용 관련 6자간 업무협약 체결

2025-0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이하 ‘과기혁신기금<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자금을 출자한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기금(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신한자산운용, 연구개발 자금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등이 함께 참여했음

과기혁신기금(펀드)은 시중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과학분야 특화 기금(펀드)으로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될 예정임. 연구소 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혁신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12대 전략기술 기업에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육성, 기술환경 격변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도 뒷받침할 계획임

과기혁신기금(펀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를 통해 총 4,94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신한자산운용이 기금(펀드) 운용을 맡음

과기혁신기금(펀드)은 모기금(펀드)으로서 신생기업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이 조성할 자기금(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국내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매년 1,250억 원의 모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자기금(펀드) 운용사에서 민간자금을 추가로 대응하여 매년 총 2,500억 원 규모 이상의 기금(펀드)을 결성하여 투자할 예정임.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기금(펀드)이 결성·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결성되는 각 기금(펀드)은 8년간 운용 후 청산할 계획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이 국내의 혁신적 기술을 사업화하고, 우리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기술사업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음

과기정통부와 신한자산운용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과기혁신기금(펀드)의 주목적 투자방향 결정(’25.4월), 자기금(펀드) 운용사 선정(’25.6월), 자기금(펀드) 결성(’25.12월)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2-04 시행

해양수산부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5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6호, 2025. 1. 21. 공포, 1. 2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은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화 추진 (안 제4조)

- 해양수산부장은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보급,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안 제5조)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교육시설·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로 정함

③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안 제6조)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업무와 관련된 실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로 정함

④ 항만기술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안 제8조)

-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및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으로 정함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4호, 2025. 1. 21. 공포, 2.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안 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②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안 제7조)

-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규모 또는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③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관리 (안 제8조)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이 작성한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제출하도록 함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수송 및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사업과 관련한 신고·승인·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 시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송 및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제2조 및 제3조)

- 수송의 범위를 발전시설·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수송관·선박·화물자동차·철도차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함
-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를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등으로 하되,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함

②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및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③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8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포집 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등 설치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④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 (제10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선박을 이용한 수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등 수송 수단별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⑤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 등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안전검사의 기록 작성·보존 및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규정함
-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⑥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 및 저장소의 사용신고 (제26조 및 제28조)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⑦ 모니터링계획 승인 절차 (제33조)

-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저장 여건의 변화 등이 포함된 15년 이상의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장소를 폐쇄한 이후에는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⑧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⑨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 중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로 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07 시행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9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을 정하고,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세부 기준 및 시설의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2025-02-07 시행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요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기준 및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제2조)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이나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의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등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②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를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 신탁업자가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함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 1명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④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 (제27조)

- 복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 등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⑥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1조)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2개월분 및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한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을 고려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영업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산정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03. ~2025.03.17.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 (제2조제7호)
 -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 (제7조의3, 제247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 ③ ETF·ET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 신설 (별표1, 제19조의3)
 -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 ④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 (제34조)
 -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 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 (제78조)
 -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 ⑥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 (제87조, 제99조, 제109조)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그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허용
- ⑦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 (제124조의2)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도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⑧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 완화 (제137조)
 - 직접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인 증권사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며, K-OTC에서 매출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하므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를 완화

⑨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 (제176조의5조)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뿐만 아니라 주가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

⑩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 (제182조)

-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대차중개기관의 경우, 단순중개만 수행하므로 대차 중개업무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

⑪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 (제185조)

-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국채 또는 통안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 금지 예외 인정

⑫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제36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02-2100-2652, 팩스: 02-2100-2648\)](tel:02-2100-2652)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2025.03.19.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법적 안정성의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 이에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수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에 규정 (안 제3조의2, 제748조제3항)

-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 (안 제399조의2)

② 기존 법리의 개선

- 동기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취소가 허용되어 온 “기초착오”를 규정하는 등 착오에 관한 규정의 확충 (안 제109조)
-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 (안 제379조)
-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신뢰이익 배상 법리를 발전시켜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정 및 체계 개선 (안 제387조, 제395조 등)
-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 (안 제569조 이하)

③ 새로운 규정의 도입

-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본인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0조의2)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안 제538조의2)

④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함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tel:02-2110-3164)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05.
~2025.02.26.

가스요금 경감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명확화 (안 제10조의2)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스요금 경감지원을 대신 신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에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tel:044-203-5236)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2025.03.17.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4172, 팩스: 044-201-5553\)](tel:044-201-417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5.02.06.
~2025.03.18.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마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함

②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명확화 (안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담배 유해성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회의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④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 (안 제9조)

-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의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안 제1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접수,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검사결과서등의 검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 또한 법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폐기,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⑥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전화: 043-719-1796, 팩스: 043-719-179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025-02-07 발의
<p>2024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체불기업에 구상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p> <p>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도 오히려 계열사 합병, 주식 매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조차 외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 (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p>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02-07 발의
<p>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 (안 제363조 등)</p>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02-07 발의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증권)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고가의 상품이 발생했을 때 투자 단위가 커져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ETN과 ETF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6조의4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2025-02-07 발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0인)

2025-02-03 발의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2-03 발의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4)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025-02-03 발의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의원 등 13인)

2025-02-04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025-02-05 발의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9인)

2025-02-06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025-02-07 발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자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 (안 제18조제1항제14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2025-02-04 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도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7조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5-02-06 발의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황임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약처에서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SNS에서 일본 1위 관절약을 직수입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업체의 상품이 실제로는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제 체계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제효과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자 함 (안 제44조의 7제1항제3호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2025-02-05 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광물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권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제143조제1호라목,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패션산업 진흥법안(김재원의원 등 13인)

2025-02-04 발의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 40.3조원에서 2022년 45.7조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 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02-04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공리활동 등 높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점, 사업을 통해 유입된 수익은 해당 병원 시설·장비 등에 재투자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 의료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리 중소기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025-02-05 발의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경우 전기사업자등이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4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

2025-02-07 발의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025-02-04 발의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5-02-06 발의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2025-02-04 발의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7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2025-02-03 발의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5-02-03 발의

현행법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 등 국가핵심산업의 경우에 다수의 회사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기술인력 브로커들이 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현행법의 형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목적 등의 직업소개,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직업소개를 한 자의 경우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5-02-04 발의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2025-02-0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동등록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5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법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이라 한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이하 “대리인”이라 한다)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같음하여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025-02-06 발의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0인)

2025-02-07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2025-02-04 발의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의4 신설 등)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등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그런데, 이는 연락이 안 되는 수분양자 등 현실적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며,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를 요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공사중인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생활숙박시설 용도 그대로 사용하려는 자를 포함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 개정)

다만,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7호 신설)

한편,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개별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 정책의 수립, 시장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분양 현황 관리, 수분양자 보호 등 정책 수립 및 대응에 한계가 있고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2/10(월) 10:00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11(화) 10:00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12(수) 14:00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13(목) 14:00	- 대정부질문(경제 분야)
	2/14(금) 14:00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2. 위원회 일정

구분	구분	일시	내용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2/10(월) 14:00	- 법안 심사
	조세소위	2/11(화) 11: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13(목) 10:00	- 법안 의결
국방위	전체회의	2/11(화) 14:30	- 법안 상정, 업무 보고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2/13(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10(월) 09:30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조달 뜯다 기업 날다	이종욱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2/11(화) 14:00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손명수·맹성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2/11(화) 14: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	최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2/12(수) 10:00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 :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	최은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3(목) 14:00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박정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2/14(금) 10:00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서영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4(금) 13:30	국제물류 산업발전방안 세미나	이양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자료집 등	2/10(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3호(2025-3호) 발간	국회도서관	
	2/12(수)	「World&Law」 2025-2호 발간		
	2/12(수)	「금주의 서평」 제715호(2025-6호) 발간		
	2/11(화)	「NABO Focus」 제90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2/3(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호(2025-2호) 발간	국회도서관	
	2/3(월)	「Data+」 통권 제1호(2025-1호)		
	2/5(수)	「금주의 서평」 제714호(2025-5호)		
	2/4(화)	「NABO Focus」 제88호	국회에산정책처	
	2/6(목)	「이슈와 논점」 제2322호: 전자담배 과세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03.~2025.02.0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3(월)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스)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3(월)	해외 규제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
2/3(월)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4 (2025년 2월)
2/5(수)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2/7(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1 (2025년 2월 1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